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에 대한 문헌고찰

윤정원¹ · 김정솔^{2*}

¹나눔과 열림 중증 장애인치과 치과위생사, ²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Dental Hygiene Legislation in Korea and Japan

Jung-Won Yun¹, Jung-sool Kim^{2*}

¹Dental hygienist, Nanum and yeollim dental clinic for the severe disabilities

²Associate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esent measures of improving the nation's dental hygiene law system by comparing the dental hygiene laws of Korea and Japan.

Method: The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studie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 and various agencies were utilized for a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the dental hygienist law systems in Korea and Japan.

Results: The dental hygienist authorities in Korea and Japan serve as dentists' "under the guidance", but in Japan, a dental hygienist can perform any preventive work requested from the dentist if the latter is not present on site.

The common groun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atutes involves the law (law),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The difference is that Korea's law on medical technicians and others makes up eight jobs, including medical technology, medical recording, and optical science. However, Japan's dental hygienist laws alone protect its business authority.

Conclusions: The nation's dental hygienist legal system will need to be revised through the opening of the Dental Hygiene Act to receive institutional protection.

Keywords Dental hygienist, Japan, Korea, Law

Received on Nov 20, 2019. Revised on Nov 23, 2019. Accepted on Dec 16,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im@ch.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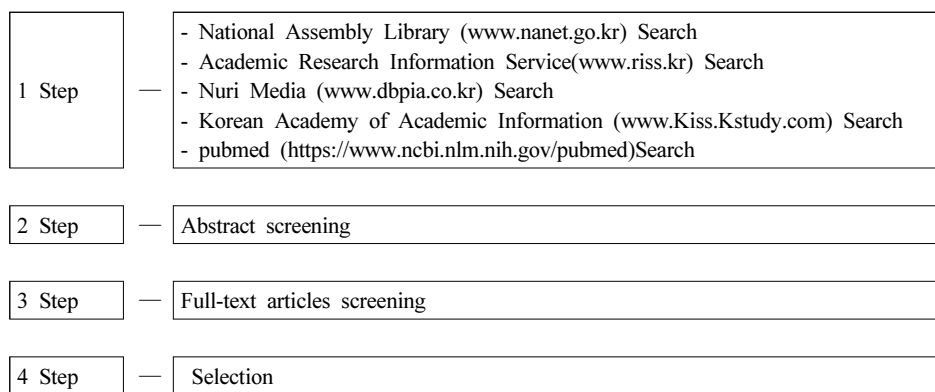
I. 서론

치과위생사 관련은 법률은 1963년 7월 31일 제정된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였으며[1], 1967년 8월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1973년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면서, 의료기사법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의료기사법은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개정되었다[2]. 이후 2011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범위기존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 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등으로 추가되었으며, 2015년 2월 28일까지 제도기간을 거쳐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다[3].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일부

진료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진료보조 및 수술 보조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을 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4].

우리나라의 의료기사는 각 직종별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에 속해 있어, 직종별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 독자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권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5], 물리치료사 직종에서는 2019년 5월 단독법이 발의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을 요청하였다.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범위 및 권한의 개정을 위해[6] 2018년 2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민청원, 거리시위, 리본 패용



<Figure 1> literature search and step-by-step literature screening process

캠페인, 치과의사의 개별지시 서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 발의 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현실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속하는 직종의 전문 영역이 확연히 다름에도, 각 지역간의 업무 내용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7], 향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직업 수행에 있어 지나친 규제를 벗어난 의료기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8].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치위생 학문이 발전되기 전 제정된 법률로, 교육과정이 2년제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학과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한국과 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과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및 업무 권한에 따른 업무 범위를 분석하여 현행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법령 개선을 위한 접근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한국,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비교 고찰을 위해 통계청 및 각 기관들의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 수집과정에서 학위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술지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NDSL),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외 논문은 Pubmed에서 논문을 검색 하였으며, 기타 정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가법률정보센터, 국민건강관리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세계치과위생사 연맹 사이트, 법령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최근 정보를 인용하였다<Figure 1>. 치과위생사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 주제로 하거나,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국내 관련 학계와 실무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관련 사이트 및 법령 등의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검색어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345개, “치과위생사”, “의료인” 38개, “일본” 18개, 국외 문헌은 “Dental hygienist”, “Japan” 14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논문선정 과정을 통해 국내 문헌 14개, 국외논문 3개의 선행연구를 정하였다<Table 1>.

III. 연구결과

1.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역사

한국 치과위생사 최초교육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고, 1977년 2년제 교육과정에서 1994년 3년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 4년제 교육과정이 개설되면서 치위생교육이 3, 4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22년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Table 1> Selected Full-text articles

Year	Title	published
1 Lee SJ/2006	Job analysis of dental hygienists' oral health education in a certain area	Cunganguniversity [master's thesis]
2 Shin SJ et al/2007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 and their practi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3 Kim YS et al/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4 Park JH et al/2010	Original articles :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5 Kim SJ/2013	A review on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6 Choi YR et al/2016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 Hyeong Jh et al /2007	The opinions of health care workers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8 Lee ES et al/2018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s to improve the ability of dental hygienists as medical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9 Ryu HG/2008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 Lee DS/2018	Problems to solve and job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Ga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11 Jang YE/2017	Multinational comparison of dental hygienists' scope of work and authorized practices in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2 Jeong HJ/2010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Comparison of Some Curriculum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 Yoon TH/2016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ystems focusing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14 Kim SJ et al/201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ealth service in the elderly care institution	Association of Korean Dentists Dentistry Policy Institute
15 JOHNSON, P.M/2008	Dental hygiene regulation :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Dental Hygiene/
16 Y. Sakakibara./1997	Historical record of dental hygienists	Ishiyaku Publishersinc
17 Noriko Kanazawa	Prospects and Subjects of Dental Hygienists -Aiming at the Coordination with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Annals of Japan Prosthodontic Society

<Table 2> History of Dental Hygiene i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Education	1965	1922
Establishment of school	1977(2year course)	1949(1year course)
	1994(3year course)	1983(2year course)
	2001(4year course)	2001(3year course)
		2004(4year course)
Legislation of a law	1971 Medical Aid Act	194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1977	1951

1949년 1년제 교육과정의 시작으로 1983년 2년제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었고, 2001년 3년제, 2004년부터는 4년제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치과위생사 협회설립이 1977년에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는 1951년 협회가 설립되었다<Table 2>.

2. 한국과 일본의 업무 권한 및 범위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률 구조는 비슷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 단독법이 개설되어 있어,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성 부여와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에 한해서는 일반지도도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업무 범위로 진료보조, 예방업무, 구강보건교육 업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증 치과위생사 제도가 확립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업무 중 방문진료를 한 경우, 치과진료 1개월 이내에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가 단독 재방문하여 요양지도도를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방문진료 한 경우 3개월 이내 치과위생사의 요양지도가 가능하다<Table 3>.

3. 한국과 일본의 법률개정

한국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은 1971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였으며, 1973년 의료기사법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이 지시 및 감독 하(1971년)에서 지도하(1982년)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지도아래로 변경되었다. 일본의 경우 1948년 치과위생사법으로 시작되었고, 1955년 치과진료 보조업무가 추가되었으며, 2014년 직접지도에서 지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Table 4>.

4. 한국과 일본의 법률 비교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의 공통점은 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포함하여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이 단독 법률로 존재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을 보호받고 있다<Table 5>.

<Table 3> Scope of work and authorized practices i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Authorized practices	Direct supervision	Direct supervision, General supervision
Scope of work	Removing plaque and deposits; applying fluorides; placing temporary filling and fixtures; removing the temporary fixtures; making impressions of teeth; placing and removing orthodontic braces and wires; and performing other duties required to prevent teeth and oral diseases and teeth and oral hygiene. In such cases, dental hygienists may expose and process dental x-rays within a public health institution or medical institution equipped with a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in compliance with the safety control standards referred to in Article 3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sist Prevention oral guidance
Titl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Dental Hygienist Act

<Table 4> Law revisions i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Revision of law	1971 Medical Aid Act 1973 Medical technician Act (Directed and supervised) 1982 Medical technician Act(Directed) 1996 Addition of radiography work 2011 Medical technician's. Etc. Act (under supervision) 2011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lassification of Dental Hygiene Work Scope)	1948 Dental Hygiene Act 1955 Add assist 2014 Revision from direct supervision to supervision

<Table 5> Law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Japan
Difference	The only one Law, including the optician, medical recorder and six medical technicians - No chapter, Article 32 - Article 22 is related to dental hygienist	Independent Law -Article 21
Same	Composed of Act-Enforcement ordinance-Eforcement regulation	

IV. 고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한국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치과위생사 법률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최초의 교육을 비교하면, 1922년 일본에서 먼저 교육이 시행되었고, 한국은 40여년 늦은 1965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학의 정규과정은 한국의 경우 2년, 일본의 경우 1년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정규교육의 발전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6개의 의료기사와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포함한 총 8개의 직종이 모두 포함된 동일 기준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 단독법으로 치과위생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업무권한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로 동일하였으나, 일본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실시할 때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을 시, 치과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예방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예방 및 진료보조 또는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진료보조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의 독점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보조법의 규정을 일부 해체하여 치과위생사가 치과영역의 진료보조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의 구강 내 청소 또는 유상의치의 청소에 관련된 현장지도를 치과의사의 지도아래에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10]. 일본의 치과위생사는 2014년 직접 지도에서 지도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진료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증 치과위생사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보건업무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11][12]. 이미 유럽과 일본의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의 전신질환을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구강기능의 회복으로 전신근력이 개선되었음을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시설 노인에 대한 구강위생관리의 일상적인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13].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공통점은 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6개 직종의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포함한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이 단독의 법률로 존재하며,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권한이 보호받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시작하여, 1973년 ‘의료기사법’으로 제정되었고, 6개 직종의 법률에서 시작되어 8개의 직종으로 증가하면서, 의료보조원법에서 명칭만 변경될 뿐 업무범위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치과위생사가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시장의 확대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병원 내 단순 진료협조의 업무 수행이 아닌 예방업무를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 되고 있다[14].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인 예방업무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은 현행 법률 하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지만,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는 치과의사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무에 한해서는 간접지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4].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8개의 직종을 동일한 기준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전문성 측면에서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15], 미래의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문제라고 판단된다. 의료기사에 관한 각 직종이 학문적, 임상적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제도 비교를 통해 국내 치과위생사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존

문헌 및 법령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 업무권한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로 동일하였지만, 일본은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를 실시할 때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치과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

한국과 일본의 치과위생사관련 법령의 공통점은 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이점은 한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8개의 직종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 단독으로 법률이 존재하여 업무권한을 보호받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법제도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단독법 개설을 통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Ko KW, Lee KW, Seo SK: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therapist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and job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25(5):343-351, 2013.
2. Park MS, Kim HJ, Bae SM, Yoon MS, Jang YJ, Kim KS et al: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Daehan Narae Publishing, Seoul, 34-45, 2018.
3. Kang BW, Go MH, Gu IY, Kim GY, Kim BN, Kim YG et al. Medical laws for dental hygienist. 14th ed. Koomonsa, Seoul, 261-285, 2017.
4. Choi YR, Seo HY, Ryu EJ, Choi EM.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6):495-501, 2016. DOI : 10.17135/jdhs.2016.16.6.495.
5. Lee JW, Park EK.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Law Review* 38:393-412, 2010.
6. Lee HJ, Shin SJ, Bae SM, Shin BM. Issues and Challenges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2):409-423, 2019. DOI : 10.5392/JKCA.2019.19.02.409
7. Shim MJ, Koo BK, Park CE. Study on legal issues and scope of medical technologist's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49(2):55-68, 2017. DOI : 10.15324/kjcls.2017.49.2.55
8.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30>
9. Ryu HG.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6):1067-1077, 2018. DOI: 10.13065/jksdh.20180092
10. Kanazawa N. Prospects and Subjects of Dental Hygienists—Aiming at the Coordination with Medical Care and Elderly Care. *Annals of Japan Prosthodontic Society* 6:267-272, 2014.
11. <https://www.mhlw.go.jp>
12. <https://shikakara.jp/dh/column/basic/basicbasic/low/>
13. Kim SJ, Shim HK, Lee JN et al. Study on the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in japan. *Health Policy Insitute in Korean Dental Association* 3:2016.
14. Lee II, Cha DP, Han DW. An analysis of current issues regarding global legislations about the medical the chnicians ac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41-143, 2015.
15. Baek JC, Yang SH.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4):138-146, 2011.